

[별표 1]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 · 주류 · 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 10. 통관목록 중 품명 · 규격 · 수량 · 가격 · 물품수신인 성명 ·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 거래코드 · 공급망 정보 · 물품수신인 주소 · 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 11.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 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

①

1.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대	법 제58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법 제58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 및 적합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 및 적합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 및 적합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부작관이 인정하는 수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부작관이 인정하는 수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마.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기자재	3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사. 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세로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을 또는 부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차.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2.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 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부작관이 인정하는 수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부작관이 인정하는 수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부작관이 인정하는 수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두 같은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나.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직합성평가기준이 일 부 같은 기자재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경우, 해당 직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평가기준이 일 부 같은 경우, 해당 직합성평가기준에 대한 시험
4.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직합성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른 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	
---	--

전파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2509호, 2022-02-28]

제77조의2(적합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②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부품배치도 및 외관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